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2018.2.9(금) 조간	배포	2018.2.8(목)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02-2100-1730)	담 당 자	심 지 원 사무관 (02-2100-1724)	

제 목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사례집 발간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
 - FIU는 출범 이후 16년간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검·경·국세청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착*시켜왔음
 - * 의심거래보고('01), 고액현금거래보고('05), 고객확인('05), 실제소유자 확인('16)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
 -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자금세탁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체제 구축, 제도 도입에서 나아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강조한 新권고기준을 발표
 - ** 금융회사의 舍社的 내부통제 책임 강화, 고객 확인제도의 개선 등
- 이에 FIU는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례집으로 구성

< 사례집 주요 내용 >

- 자금세탁방지제도 기본 개념 및 적용대상 범위 관련 사례(1장)
-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주요 제도 개념 및 관련 사례(2~5장)

* 실제소유자, 강화된 고객확인, 거래거절, 비대면 거래, 제3자 고객확인 등 주제별 분류

- FIU는 동 사례집 발간이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제도 운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FIU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증대하고 추가로 발굴되는 신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 참고로 이번에 발간되는 유권해석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자·온라인(FIU 홈페이지)으로 배포할 예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korea.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	---	---	--	--

◇ 금번에 발간되는 유권해석사례집은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고객확인제도 등 주요 제도를 54개의 유권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해설

(1) 자금세탁방지제도 기본 개념, 적용대상 범위 관련 사례(1장)

☞ 금융회사등이 구축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기본 개념,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와 금융거래의 종류를 설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 자금세탁방지체계의 기본 개념

Q) 금융회사등이 구축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체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A)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위험평가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거래시 확인·검증하는 위험기반 고객확인 의무 이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고객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체계 운용을 통해 추출되는 의심스러운 거래 등을 최종적으로 FIU에 보고하기 위해 내·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 세 개의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및 조직정비, 관련 감사체계 수립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합니다.

고객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내·외부 보고체계 수립	←	- 의심거래 접수 - 고액현금거래 접수
	→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	- 범죄사실 수사 기관 통보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범위

Q) 저희는 자산운용사로서 펀드 간접판매(판매사를 통한 판매) 및 기관 대상 투자일임만을 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일반 금융회사의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 준수, 임직원 교육 및 이사회 보고 등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펀드를 직접 판매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는지요?

- A)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해 동 법률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특히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며, 다만 펀드를 간접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2조상 제3자(판매사)를 통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의심거래보고 관련 사례(2장)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담당자는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동법 제6조)

◆ 의심거래보고 정보누설 금지

Q)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요?

- A)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 열람”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제1호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4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①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로서의 보고인 경우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②각 국가 간에는 자금세탁 및 이와 연루된 전제범죄와 테러자금조달의 수사, 기소 및 관련 사법절차 수행을 위해 최대한 폭넓은 사법공조가 필요하므로, 동법 제4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보공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동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사례(3장)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고액현금거래보고 기간

Q) 저는 증권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만료일자가 언제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30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융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간(30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기한은 민법 제155조, 제161조에 따라 그 말일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일이 2017년 2월 9일인 경우 보고기한은 원칙적으로는 30일 종료시점인 2017년 3월 11일(토)이 됩니다. 그러나 3월 11일은

토요일, 그 다음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3월 13일(월)이 보고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고객확인제도 관련 사례(4장)

☞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 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로서,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 보호예수 등 포함

◆ 실재소유자 확인

Q) 저는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인 SPC 회사가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확인 대상은 SPC 회사인가요, 아니면 SPC회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인가요?

A)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에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고객 확인을 해야 하므로 고객확인 대상은 SPC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후 고객확인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실제 대출자라면 실제 소유자 확인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